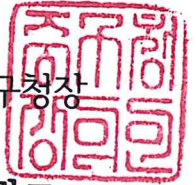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 - 55호

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8월 1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☐ 휴무일 숙직근무자 대체휴무제, 숙직 전담 공무원 채용 실시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」을 개정하여 숙직근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☐ 숙직근무 종료일이 휴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 1일 대체휴무 실시
- ☐ 숙직 전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근거 마련을 위한 당직편성 기준 변경
- ☐ 임신여성, 장애인 등 당직근무 편성 제외 기준 명시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총무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(예관동), 문의전화:02-3396-4505, FAX:02-3396-8601, 메일: milka001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(☎02-3396-4505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
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숙직 근무자의 휴무) ①숙직근무자는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대직자에게 업무 인계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한다. 다만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②부서장은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,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정규직 공무원”을 “구 소속 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당직근무 대상자 중 임신 중인 여성, 장애인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로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제5조(숙직 근무자의 휴무) 숙직근무자는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도록 한다. 다만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제6조(당직근무자의 편성) ① 당직 근무자는 <u>정규직 공무원</u>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② ~ ④ 생략 ⑤ <신 설>	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제5조(숙직 근무자의 휴무) ① <u>숙직근무자는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대직자에게 업무 인계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한다. 다만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</u> ② <u>부서장은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,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</u> 제6조(당직근무자의 편성) ① ----- <u>구 소속 공무원</u>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당직근무 대상자 중 임신 중인 여성, 장애인 및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로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.</u>